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조 5,502억원으로 당초(1차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245억원(2.1%)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7,674억 1천 7백만원(3.9%)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0,125,703	20,550,203	424,500	2.1
시 세		19,552,425	19,552,425	-	-
세외 수입	경상적	56,917	56,917	-	-
	임시적	171,740	171,740	-	-
보조금	국고 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342,917	467,417	124,500	36.3
	법정잉여금	-	300,000	300,000	1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20,125,703	20,550,203	424,500	2.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2,917	767,417	424,500	123.7
	순세계잉여금	342,917	467,417	124,500	36.3
	법정잉여금	-	300,000	300,000	순증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기정(당초)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지방세 (계)	19,552,425	19,552,425	-	-
보 통 세	17,495,135	17,495,135	-	-
취 득 세	4,632,967	4,632,967	-	-
주 민 세	594,465	594,465	-	-
재 산 세	2,998,999	2,998,999	-	-
자 동 차 세	1,104,975	1,104,975	-	-
레 저 세	124,873	124,873	-	-
담 배 소 비 세	564,349	564,349	-	-
지 방 소 비 세	2,041,427	2,041,427	-	-
지 방 소 득 세	5,433,080	5,433,080	-	-
목 적 세	1,835,212	1,835,212	-	-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0,925	-	-
지 방 교 육 세	1,534,287	1,534,287	-	-
지 난 년 도 수 입	222,078	222,078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0년 기정(당초)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 외 수 입 (계)	228,657	228,657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6,917	56,917	-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14,028	14,028	-	-
기 타 사 용 료	2,301	2,301	-	-
증 지 수 입	724	724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5,404	35,404	-	-
기 타 이 자 수 입	4,460	4,460	-	-

예산과목	2020년 기정(당초)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71,740		
시유재산매각수입	57,957	57,957		
과징금및과태료등	680	680	-	-
기타수입	106,037	106,037	-	-
체납처분수입	2	2	-	-
그외수입	106,035	106,035	-	-
시금고출연금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103,369	103,369	-	-
시유재산위탁예금이자수입	156	156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253	1,253	-	-
세외수입환급금 시호소멸분	1,256	1,256	-	-
지난년도수입	7,066	7,066	-	-

보조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등	1,704	1,704	-	-
국고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2,917	767,417	424,500	123.7
순세계잉여금	342,917	467,417	124,500	36.3
법정잉여금	0	300,000	300,000	순증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7,059억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065억원 대비 0.02%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2,706,483	2,705,942	△542	△0.02	
행정 관리	소 계	842,189	56,112	△542	△0.06
	행정운영경비	785,482	-	-	-
	재무활동	-	-	-	-
	사업비	56,707	56,112	△542	△0.1
교 부 금	1,864,287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 정		증감	비율
합 계	5,199	5,199	4,658	△542	△10.4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47	1,047	717	△330	△31.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79	1,879	1,818	△61	△3.2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	△10	△1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10	△20	△66.7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	2,222	2,112	△110	△4.9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1	11	-	△ 11	△100

II .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2조 1,063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3,256억원),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500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74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1.8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3,000억원) 등에 세출예산 2조 8,329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재원은 국고보조금(1조 7,32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5,830억원), 기금 예수금(500억원), 지방채(△3,468억원), 회계간전입금(△3,453억원), 세출사업 구조조정(1조 1,591억원)으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행정국	과목구분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비 322,964,753천원) (단위 : 천원)		
	자치단체경 상 보 조 금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x2,183,316,571천원) 2,506,281,324천원	(x400,000,000천원) 400,000,000천원	(x1,783,316,571천원) 2,106,281,324천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결정에 따른 서울시 소요액 및 운영비 지원		
※ 재난지원금 2조 1,050억원 + 운영비 지원(425개동) 12억 7천 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조정교부금				
행정국	과목구분	○ 조정교부금(시비) (단위 : 천원)		
	자 치 구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x-) 3,586,852,018	(x-) 3,286,852,018	(x-) 300,000,00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 일부 반영		

□ 사업명: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노동민생 정책관	과목구분	○ 서울 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시비 575,896,500천원) (단위 : 천원)		
	기금전출금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x-) 325,586,500	(x-) 0	(x-) 325,586,500
서울소재 소상공인(67만개소) 중 용자제한업종(약 10만개소) 제외한 매출액 2억 미만 업체(41만개소)에 대한 영업비용 지원 (41만개소 중 약 178,570개소는 기존 재난관리기금 2,500억원으로 지원)				

※ 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5,756억원 = 기금전출금(3,256억원 + 기금 2,500억원)

※ 기금전출금 추경 3,256억원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3246억원 + 운영비 지원(10억원))

2.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조 5,502억원으로 기정예산(1차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245억원(2.1%) 증액된 수준임.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7,674억 1천 7백만원(3.9%)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차 추경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0,125,703	20,550,203	424,500	2.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2,917	767,417	424,500	123.7
순세계잉여금	342,917	467,417	124,500	36.3
법정잉여금	-	300,000	300,000	순증

※ 순세계잉여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용자원 잔여분 2,512억원 중 1,245억원 반영

※ 법정잉여금: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4,194억원 중 3,000억원 반영

-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서울시 분담액 마련을 위한 순세계잉여금과, 자치구 분담액 마련 지원(조정교부금 교부)을 위하여 법정잉여금을 세입 편성하려는 것임.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전망에 따른 세입은 28조 9,755억원, 세출은 26조 5,91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2조 6,445억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2,608억원)와 보조금반납액(793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2조 1,419억원) 대비 1,625억원이 증가(7.6%)한 2조 3,04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망〉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B)			실제보조금 집행잔액 (C)	순 세계 잉 여 금 (A-B-C)
		계(a+b)	집행액(a)	이월액(b)		
27조 1,348	28조 9,755	26조 5,917	26조 3,309	2,608	793	2조 3,044

* [초과세입액 1조 8,407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4,638억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 (A) + (B) - (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0년 1차	2,304,433	7.6	1,840,672	463,761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24,333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03,00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38,571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19,901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중 가용재원으로 2020년도 재무국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대상액은 5,941억원으로, 재무국에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429억원의 세입예산 편성에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 분담액(3,230억원) 마련을 목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1,24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편성 후 순세계잉여금 잔액 1,267억원).

※ 정부 재난지원금 자원 소요: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서울시 분담금 3,230 억원: 정부 보조율 서울 81.9%(그 외 지역 86.1%)

〈재무국 일반회계 잉여금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19회계	세입편성			비고
	잉여금	1차추경	2차추경	잔액	
보전수입 등	2,304,443	342,917	424,500	1,537,026	
잉여금	2,304,443	342,917	424,500	1,537,026	
순세계잉여금	594,104	342,917	124,500	126,687	가용재원
법정잉여금	1,710,339		300,000	1,410,339	법정의무 경비 중 (조정교부금)

○ 또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중 가용재원 외의 법정의무경비 재원으로 사용되는 2020년도 재무국 법정잉여금 세입편성 대상액은 1조 7,103억 4천만원으로,

○ 재무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치구 분담액(1,608억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해당 재원을 조기에 제공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전망에 따른 법정의무 자치구 전출금인 ‘조정교부금 정산분(총 4,194억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결산(2020년 5월) 전에 ‘법정잉여금’ 3천억원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법정 의무 경비 〉

- ◆ **법정 의무 경비(A+B+C+D) 1조 7,103억원**
 - **자치구 전출금(A) 6,311억원**
 - **조정교부금 4,194억원**
 - 보통세 증수분 × 22.6%
 - **재정보전금 1,479억원**
 - 특별시분재산세 증수분 × 100.0%
 - **시세징수교부금 638억원**
 -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 증수액의 3%
 - ※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제외
 - **교육청 전출금(B) 3,767억원**
 - **법정전출금 1,976억원**
 - 보통세 증수분×10% + 담배소비세 증수분 45%
 - **지방교육세 전출 1,791억원**
 - 지방교육세 증수분 등 × 100%
 - **타회계 전출(C) 1,084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소방안전특별회계(46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247억원)**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증수분 100%, 지방소비세 증수분의 35%
 - **감채기금(D) 5,941억원**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경비(1조 1,162)) × 50%

□ 조정교부금 개요

- **의의** :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
- **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원** : 보통세의 22.6%
- **종류** : 일반조정교부금(총액의 90%), 특별조정교부금(총액의 10%)
- **교부방법**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
- **2020년 조정교부금 규모(계획)** : 3조 2,869억원
- **2019회계 결산전망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액(안)** : 4,194억원

- 재무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액을 적기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결산전에 서둘러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진행중이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결산(전망)액을 근거로,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제1~2회)과 법정잉여금(제2회)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19.8.16.)호] : 전년도 세입과 세출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전망된다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잉여금의 세입 예산과목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재무국에서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해 오다가, 감사원 현지감사(2020.2월) 지적에 의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두 과목을 분리하여 예산서에 계상하였는바,
-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적 대처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68쪽)>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나. 세입 추가 감액 편성 필요성 여부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5,941억원) 중 금번 세입예산편성(1,245억원)으로 누계액은 4,674억원(78.7%)에 달하며 잔여액은 1,267억원에 그치고 있음.

<재무국 일반회계 잉여금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19회계 연도	세입편성			비고
	잉여금	1차추경	2차추경	잔액	
보전수입 등	2,304,443	342,917	424,500	1,537,026	
잉여금	2,304,443	342,917	424,500	1,537,026	
순세계잉여금	594,103	342,917	124,500	126,686	가용재원
법정잉여금	1,710,340		300,000	1,410,340	법정의무 경비 중 (조정교부금)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20년 3월(3,429억원)과 금번(1,245억원)에 이어 2020년 6월에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등 긴급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기관은 최근 국내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발표 >

전망기관	한국은행	OECD	S & P	무디스
당초	2.3%	2.3%	1.6%	1.9%
변경	2.1%	2.0%	-0.6%	0.1%
	'20.02.27.	'20.03.02.	'20.03.23.	'20.03.26.

- 따라서, 서울시 세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은, 국세의 감액편성(국회 수정가결(2020.3.17.), 최종 8,432억원 감액)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의 세입 감액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지금과 같은 긴박한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징수 확대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겠음.

- ※ 지방소비세의 세원(부가가치세의 21%)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2,248억원 감액, 지방소득세의 세원인 법인세는 2,248억원 등 총 8,432억원 감액
-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인하(50% 인하, 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안) 등 세외수입 세입 또한 결손이 예상
- ※ 1~2월 거래 실적이 반영된 3월말 현재 취득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4% 추가 징수(예상)되었으나, 3월부터 거래량 급감으로 세수 감소 예상(참고자료: 코로나19발 거래절벽 가시화... 수도권 3월 거래 '반토막'(서울경제, 2020.4.28.) 등 기사 참조)

< 2020년 3월말 현재 주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 전년동기 3조 6,935억원(진도율 20.3%) 대비 3,951억원(10.7%) 증가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0.3월			전년동기 징수액(C)	전년대비	
		당월징수	누계징수(B)	진도율(B/A)		증감액(B-C)	비율(B/C)
계	195,524	9,516	40,886	20.9	36,935	3,951	110.7
취 득 세	46,330	4,763	15,745	34.0	11,459	4,286	137.4
지방소득세	54,331	2,404	9,909	18.2	9,317	592	106.4
지방소비세	20,414	0	4,484	22.0	5,399	-915	83.1
자동차세등	74,449	2,349	10,748	14.4	10,760	-12	99.9

※ 잠정실적으로 수행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수기분 징수액 등 미반영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조 7,05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당초) 대비 0.02%(5억 4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2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합 계	2,706,483	2,705,942	△542	△0.02
행정관리	인력운영비	783,271	-	-
	기본경비	2,211	-	-
	사업비	56,707	56,112	△542
교부금	소 계	1,864,287	-	-
	재정보전금	1,459,998	-	-
	시세 징수교부금	404,289	-	-

- 재무국 세출예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시책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개 사업에서 5억 4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감추경 내역)합계			5,199,443	-541,669	4,657,774	-10.4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소계	1,047,330	-330,000	717,330	-31.5
		사무관리비	90,300	-	90,300	
		공공운영비	1,200	-	1,200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100.0
		시책업무추진비	20,000	-	20,000	
		특정업무경비	69,000	-	69,000	
		자산및물품취득비	816,830	-280,000	536,830	-34.3
자산 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소계	1,878,631	-60,669	1,817,962	-3.2
		사무관리비	653,350	-	653,350	
		공공운영비	1,213,981	-60,669		-5.0
		시책업무추진비	11,300	-	11,300	
세제과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소계	10,000	-10,000	-	-100.0
		사무관리비	10,000	-10,000	-	-100.0
세무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위 한 연찬회	소계	30,000	-20,000	10,000	-66.7
		사무관리비	30,000	-20,000	10,000	-66.7
38세금 징수과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소계	2,222,482	-110,000	2,112,482	-4.9
		사무관리비	3,600	-	3,600	
		기타보상금	30,000	-	30,000	
		포상금	2,188,882	-110,000	2,078,882	-5.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소계	11,000	-11,000	-	-100.0
		사무관리비	11,000	-11,000	-	-100.0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동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등에 따라 공통소요 행정물품 수급관리 및 자재창고 관리, 회계사고 대비 재정보증 보험 가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 정책 자금 수요에 따라 국외업무여비(5천만원) 전액과, 노후물품 교체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34.3%(2억 8천만원)를 감액 조정(△31.5%)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소계	1,047,330	-330,000	717,330	-31.5
		사무관리비	90,300	-	90,300	
		공공운영비	1,200	-	1,200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100.0
		시책업무추진비	20,000	-	20,000	
		특정업무경비	69,000	-	69,000	
		자산및물품취득비	816,830	-280,000	536,830	-34.3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17,330	(x-) 1,047,330	(x-) △330,000
사무관리비	(x-) 90,300	(x-) 90,300	(x-) 0
공공운영비	(x-) 1,200	(x-) 1,200	(x-) 0
국외업무여비	(x-) 0	(x-) 50,000	(x-) △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0,000	(x-) 20,000	(x-) 0
특정업무경비	(x-) 69,000	(x-) 69,00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536,830	(x-) 816,830	(x-) △28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국 외 업 무 여 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 5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전체 감액 = 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의 사유로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감액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 436,300천원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 156,3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 150,000천원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 150,000천원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 230,530천원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 230,53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 정책 자금 수요에 따른 감추경	

- 코로나 19 대응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복합기 및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예산의 34.3%(2억 8천만원)를 감액한다고는 하나, 세수여건 악화 및 긴급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출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바, 사무기기의 교체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추가적인 감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동 사업은 시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시유재산 공제 가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중 공유재산 책임보험료 예산의 5%(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자산 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소계	1,878,631	-60,669	1,817,962	-3.2
		사무관리비	653,350	-	653,350	
		공공운영비	1,213,981	-60,669		-5.0
		시책업무추진비	11,300	-	11,300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817,962	(x-) 1,878,631	(x-) △60,669
사무관리비	(x-) 653,350	(x-) 653,350	(x-) 0
공공운영비	(x-) 1,153,312	(x-) 1,213,981	(x-) △60,6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1,300	(x-) 11,300	(x-) 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100,000천원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100,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 226,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 226,00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7,35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7,35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320,00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320,000천원
공공운영비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 1,213,981천원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 1,153,312천원
	증감사유	
	코로나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전체예산의 5% 감액을 결정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11,300,000원 = 11,300천원	○ 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11,300,000원 = 11,300천원

- 본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가격산출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의 가격평정 등)에 따라 통상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적기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와 불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의 가격평정 등)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토론회, 연찬회, 워크숍 감액편성

- 재무국에서는 “세무공무원 정책 토론회(2회)”,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2회 중 1회)”,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 워크숍(1회)”의 각 사무관리비(행사성 경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감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세제과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소계	10,000	-10,000	-	-100.0
		사무관리비	10,000	-10,000	-	-100.0
세무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소계	30,000	-20,000	10,000	-66.7
		사무관리비	30,000	-20,000	10,000	-66.7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소계	11,000	-11,000	-	-100.0
		사무관리비	11,000	-11,000	-	-100.0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x-) 0	(x-) 10,000	(x-) △10,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	(x-) 10,000	(x-) 30,000	(x-) △20,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사무관리비	(x-) 0	(x-) 11,000	(x-) △11,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 지방세제 및 법령개정 관련 워크숍 개최 = 10,000천원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연수 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어 이에 전액 감액 하고자 함.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무관리비	○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 = 30,000천원	○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 정책 자금 수요에 따라 하반기 1회 워크숍 추진예정액 1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20,000천원) 감액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사무관리비	○ 합동워크숍 = 10,000천원	○ 합동워크숍 = 0천원
	○ 유관기관 채권 실무협의회 운영 1,000,000원 = 1,000천원	○ 유관기관 채권 실무협의회 운영 1,000,000원 = 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연수 진행의 어려움이 있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어 이에 전액 감액	

- 이번 예산 조정에서 보듯이 재무국(세무부서)에는 토론회,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이 연 4회에 달하여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은 총예산(3천만원) 일부(1천만원)만 감액된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 취소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시세입 및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포상금 감액과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비 조기 집행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은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1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징수유예 발생 등 포상금 항목 분석결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 1억1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112,482	(x-) 2,222,482	(x-) -110,000
사무관리비	(x-) 3,600	(x-) 3,600	(x-) 0
기타보상금	(x-) 30,000	(x-) 30,000	(x-) 0
포상금	(x-) 2,078,882	(x-) 2,188,882	(x-) -110,000

- 반면, 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의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매년 50억원의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예산을 편성하는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안에서는 기 집행한 예산으로 감액 조정이 없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 포상금 1억원 별도 교부

- 재무국은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의 3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동기유발을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 사업은 전년도 세입징수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에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 실적에 대해 2020년 3월 31일 자치구에 교부하였는바,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피해 극복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이며, 서울시 모든 실국이 세출구조조정 등 긴급 재정수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함.
- 따라서 본 사업규모(50억원)로 볼 때, 긴급 자원 마련에 전념하고 있는 현 시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로써, 예년에 비해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본 사업 인센티브 지급 일자 〉

(2019회계연도) 50억 지급	: 2020.3.31
(2018회계연도) 50억 지급	: 2019.4.9
(2017회계연도) 50억 지급	: 2018.3.27
(2016회계연도) 50억 지급	: 2017.4.24
(2015회계연도) 50억 지급	: 2016.5.10

- 또한 최근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보면, 150억원의 예산을 25개 자치구 전체에 고르게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시세입증대 동기부여라는 취지에 타당한 사업 방식인지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市 세입분야 평가결과 자치구별 지원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자치구	합계	2020년도 (2019회계연도)	2019년도 (2018회계연도)	2018년도 (2017회계연도)
계	15,000	5,000	5,000	5,000
종로구	631	229	195	207
중구	465	157	155	153
용산구	631	167	277	187
성동구	529	184	100	245
광진구	773	295	236	242
동대문구	629	185	222	222
중랑구	698	237	255	206
성북구	641	307	222	112
강북구	450	37	206	207
도봉구	617	120	275	222
노원구	335	160	0	175
은평구	546	209	210	127
서대문구	656	213	225	218
마포구	750	307	221	222
양천구	390	137	206	47
강서구	678	187	222	269
구로구	367	220	100	47
금천구	390	137	35	218
영등포구	627	129	252	246
동작구	930	307	322	301
관악구	795	242	272	281
서초구	481	190	122	169
강남구	559	163	142	254
송파구	710	222	287	201
강동구	720	257	241	222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